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임직원퇴직금규정 개정 변경(안)

1.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안)』(경영지원팀-22033, 2017.08.22.) 및 『제49차 임시이사회 개최 계획(대표이사방침 제3447호, 2017.08.29.)』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임직원퇴직금규정 개정내용을 보류 및 수정하고자합니다.

< 아 래 >

가. 안건 보류의 건

- 1) 배경 : 안건 재검토 요청(공기업담당관 유효준 주무관, 2017.08.28.)
- 2) 내용 : 『투자, 출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개정의견 중 퇴직급여의 지급제한 규정 삭제와 관련, 공기업담당관에서 전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여 차기 이사회 개최 시 상정하는 것으로 보류
※ 임직원퇴직금규정 개정(제8조) 당초 개정(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자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할 때 퇴직금 보장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을 삭제함
⇒ (공기업담당관의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기도 하지만 서울시 박원 순법 대상기관이므로 형을 받거나 파면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권리 제한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안건 수정 가결의 건

- 1) 배경 : 이사회 수정의결(제49차 임시이사회, 2017.08.30.)
- 2) 내용 : 임직원퇴직금규정 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제4항 신설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서식 문구의 통일성이 필요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서식 일부변경 사항]
 - '청구사유'를 '신청사유'로 변경
 - '상기본인', '위본인'을 '위 신청인', '신청인'으로 각각 변경
 - '동 건과 관련한'을 '위와 관련한'으로 변경
 - '서약합니다'를 '서약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로 변경※ 붙임3.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변경안) 참조

- [붙임] 1. 임직원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안)_기 방침자료 1부.
 2. 임직원퇴직금규정(변경안) 1부.
 3.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변경안) 1부. 끝.

	선임 09/07 선정아	팀장 09/08 代김경아	경영본부장 09/11 代이소미	대표이사 09/11 이근
협조자	선임 09/07 손현정	선임 09/08 김경아		
시행	경영지원팀-24414 (2017.09.11.)		접수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종로6가 70-6)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9층	/
전화번호	02-2096-0135	팩스번호	/ jungah@seoul-design.or.kr	/ 공개